



군보는 공문으로써의 효력을 갖는다.

선	군	수
람		

군 보

제502호 2017. 3. 30(목)

조례

- 진안군 조례 제2272호 (진안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1
- 진안군 조례 제2273호 (진안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3

고시

- 진안군 고시 제2017-33호 (대행자선정고시문) 7

발행 진안군 (편집 기획실)(063)430-2838)

진안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진안군수 0/ 363

2017년 3월 30일

진안군 조례 제2272호

진안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진안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5호 중 “다문화가족 내 아동 보육 및 교육 지원”을 “다문화가족 내 아동 보육 및 교육, 심리·정서 지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다문화가족 모국 방문 경비 지원

제4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사업) ① ----- -----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다문화가족 내 아동 보육 및 교육 지원 사업	5. ----- 교 육, 심리·정서 지원 --
6. · 7. (생 략)	6. · 7. (현행과 같음)
8. 결혼이민 여성의 친정 방문 경비	8. 다문화가족 모국 방문 경비 지원
9. · 10. (생 략)	9. · 10.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8호를 지원받을 대상자 의 자격은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중 모범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한 사람으로 한다.	<삭 제>

진안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진안군수 2/26. 3



2017년 3월 30일

진안군 조례 제2273호

진안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진안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3명이상 5명이하로”를 “4명으로”으로 한다.

제3조 제1항 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한”은 “제2조에 따른”으로 하고, 제3항 중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한다.”를 “방법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를 따른다.”로 한다.

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결산개요
2. 세입·세출의 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제7조제1항제5호를 같은 항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결산서의 첨부서류

제7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0조제1항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4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중 “제10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0조에 따른”으로 하고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4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며 제2항중 “12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2조에 따른”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위원의 정수) 위원의 정수는 <u>3명이상 5명이하로</u>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원은 검사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2조(위원의 정수) ----- <u>4명으로</u> ----- -----, -----,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u>제2조의 규정에</u> 의한 위원은 지방의회가 선임한다. 다만, 위원 중 1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위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이 추천하여 지방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u>방법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u> 의한다.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u>제2조에 따른</u> ----- ----- ----- -----, ② (현행과 같음) ③ ----- ----- 방법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를 따른다.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1. 세입·세출의 결산 2. 계속비·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3. 채권 및 체무의 결산 4. 재산 및 기금의 결산 <신 설> 5. (생 략) ② 「지방공기업법」 제2조 제1항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 ----- ----- 1. 결산개요 2. 세입·세출의 결산 3. 채무재표 4. 성과보고서 5. 결산서의 침부서류 6. (현행 제5호와 같음) ② <삭 제>

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따라 결산서 및 사업보고서와 그 밖의 서류에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일비의 지급)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 중에서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 다만, 지방의회의 의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회기와 충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생 략)

제11조(일비의 계산) 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일비의 지급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 개시일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지방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이 지방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도 일비를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여행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제10조(일비의 지급) ① 제4조에 따른 -----

-----.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일비의 계산) ① 제10조에 따른 ----- 제4조제2항에 따른 -----

-----.

② ----- 제12조에 따른 -----
-----.

진안군 고시 제2017 - 33호

지적재조사사업 측량·조사 대행 고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5조(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자)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측량·조사 대행에 관한 고시 등)의 규정에 의거, 2017년 지적재조사사업지구 [동향면 대량지구, 마령면 솔안·평산지구, 마령면 원평지구] 측량·조사 대행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23일

진안군



1. 지적측량대행자: 한국국토정보공사 진안·장수지사
2. 사업명 : 2017년 지적재조사사업
3. 지구개요 (규모 및 위치)

사업지구	사업필지	사업면적(천m ²)	비고 (위치)
3개지구	1,735	1,443	
동향면 대량지구	589	713	동향면 대량리 344번지 일원
마령면 솔안평산지구	652	275	마령면 평지리 510-3번지 일원
마령면 원평지구	494	455	마령면 평지리 29번지 일원

4. 대행업무: 지적재조사측량 및 일필지 조사
5. 문의사항: 진안군청 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담당(☎063-430-2263)